

<p>제2021-61호 2021년 4월 1일(목)</p>	<p>시  보 여수시</p>	<p>시 정 지 표 시민공감 감동시정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p>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8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1-130호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3
- 여수시 고시 제2021-140호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10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1-829호 「여수시 이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21-830호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1-943호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24
- 여수시 공고 제2021-96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72

기 타

회 람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여수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4. 1.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변경없음) :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03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3-1148호선)사업
 - 나. 명 칭 : 화정면 개도 화산 운구지~여석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가. 면 적 : 기정) 22,663㎡ → 변경) 23,779㎡(증1,116㎡)
 - 나. 규 모 : L=1,366m, B=7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여수시장
 - 나. 주 소: 여수시 시청로 1(학동)
5. 사업시행기간(변경) : 기정) 2019. 6.27. ~ 2021. 2.28. 변경) 2019. 6.27. ~ 2023.12.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다음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148	7	국지 도로	1,366	화정면 개도리 1765-1도	화정면 개도리 산591-3도	일반 도로	여수시 고시 제2019-404호 (2019. 1. 3.)	
변경	소로	3	1148	7	국지 도로	1,366	화정면 개도리 1765-1도	화정면 개도리 산591-3도	일반 도로	여수시 고시 제2019-404호 (2019. 1. 3.)	

나.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1148	소로3-1148	· 연장 및 폭원(변경없음) - L=1,366m, B=7m · 면적 및 선형(변경) - 기정 22,663㎡ → 변경 23,779㎡ (증1,116㎡)	도로 법면부 변경에 따른 선형 변경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도시계획과(☎061-659-4011) 및 심사원개발과(☎061-659-39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토지조서(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화정면 개도리	807-1	도	560	389		여수시				기정
		807-3	도	369	369		여수시				변경
2	화정면 개도리	1765-1	도	552	153		국토교통부				기정
		1765-2	도	160	160		국토교통부				변경
3	화정면 개도리	804-2	도	530	180		여수시				기정
		804-3	도	266	266		여수시				변경
4	화정면 개도리	807	전	1,804	97	강봉수	여수시 미평동 741 선경아파트 201-1405				기정
		807-2	전	77	77	강봉수	여수시 미평동 741 선경아파트 201-1405				변경
5	화정면 개도리	803	전	1,669	200	이정화	광양시 광양읍 해창길 41				기정
		803-1	전	281	281	이정화	광양시 광양읍 해창길 41				변경
6	화정면 개도리	산639-2	임	1,587	348	이상진	여수시 덕충동 146-7				기정
		산639-3	임	196	196	이상진	여수시 덕충동 146-7				변경
7	화정면 개도리	1764	도	426	406		국토교통부				기정
		1764	도	426	426		국토교통부				변경
8	화정면 개도리	산655	임	1,884	169	이상진	여수시 덕충동 146-7				기정
		산655	임	1,884	332	이민주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중양로 245-5, 1705호(드림뷰아파트)				변경
9	화정면 개도리	799	전	426	132	김석두	여수시 국동 800 중앙아파트 8-402				기정
		799-4	대	61	61	김석두	여수시 국동 800 중앙아파트 8-402				변경
10	화정면 개도리	산639-1	임	4,165	663	김동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399				기정
		산639-1	임	4,165	650	김동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399				변경
11	화정면 개도리	800	전	1,346	442	김정근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2				기정
		800-1	전	430	430	김정근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2				변경
12	화정면 개도리	797	전	1,917	323	이효석	여수시 국동 857 라인아파트 102-502				기정
						박지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9-4				
		797-1	전	495	495	이효석	여수시 국동 857 라인아파트 102-502				변경
						박지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39-4				
13	화정면	796	전	1,117	673	김동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399				기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개도리	796-2	전	652	652	김동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399				변경
14	화정면 개도리	802	전	1,352	329	이창규	여수시 무선중앙로 7-1(화장동)				기정
		802-1	전	400	400	이창규	여수시 무선중앙로 7-1(화장동)				변경
15	화정면 개도리	795	전	1,640	246	김점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4				기정
		795-1	전	304	304	김점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4				변경
16	화정면 개도리	산643	임	3,174	669	정순현	여수시 여서동 479 부영아파트 605-913				기정
		산643	임	3,174	477	정순현	여수시 여서동 479 부영아파트 605-913				변경
17	화정면 개도리	산645	임	3,570	375	강성근	여수시 문수동 35-29				기정
		산645	임	3,570	434	강성근	여수시 문수동 35-29				변경
18	화정면 개도리	산644	임	1,190	370	김영자	여수시 화정면 여석안길 16-5	동여수 새마을 금고	여수시 이순신 광장로 215(종화동)	근저당 지상권	기정
		산644-1	임	553	553	김영자	여수시 화정면 여석안길 16-5	동여수 새마을 금고	여수시 이순신 광장로 215(종화동)	근저당 지상권	변경
19	화정면 개도리	792-3	답	645	451	김영자	여수시 화정면 여석안길 16-5	동여수 새마을 금고	여수시 이순신 광장로 215(종화동)	근저당 지상권	기정
		792-3	답	645	645	김영자	여수시 화정면 여석안길 16-5	동여수 새마을 금고	여수시 이순신 광장로 215(종화동)	근저당 지상권	변경
20	화정면 개도리	산646	임	3,669	1,069	이상진	여수시 덕충동 146-7				기정
		산646	임	3,669	1,004	김금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 하길로328번길21, 303동 2304호 (화성향남서봉마을사랑으로 부영3단지)				변경
						김형준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114번길 8-21(오정동)				
21	화정면 개도리	789-1	전	3,871	452	김재현	여수시 화정면 여석길 137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여수시 어항단지로 210(봉산동)	근저당 지상권	기정
		789-3	전	532	532	김재현	여수시 화정면 여석길 137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여수시 어항단지로 210(봉산동)	근저당 지상권	변경
22	화정면 개도리	산619	임	13,884	1,256	손미진	여수시 여문2로 61, 908동 1203호(문수동, 부영아파트)				기정
						손민이	여수시 여문2로 62, 1002동 1106호(문수동, 부영아파트)				
		산619-1	임	1,031	1,031	손미진	여수시 여문2로 61, 908동 1203호(문수동, 부영아파트)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손민이	여수시 여문2로 62, 1002동 1106호(문수동, 부영아파트)				
23	화정면 개도리	762	답	222	222	김점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4				기정
		762	답	222	222	김점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4				변경
24	화정면 개도리	761	답	450	39	손미진	여수시 여문2로 61, 908동 1203호(문수동, 부영아파트)				기정
						손민이	여수시 여문2로 62, 1002동 1106호(문수동, 부영아파트)				
		761-1	답	1	1	손미진	여수시 여문2로 61, 908동 1203호(문수동, 부영아파트)				변경
						손민이	여수시 여문2로 62, 1002동 1106호(문수동, 부영아파트)				
25	화정면 개도리	788-1	전	2,486	131	이원준	목포시 옥암동 961, 965 금호타운 203동 305호				기정
		788-3	전	43	43	이원준	목포시 옥암동 961, 965 금호타운 203동 305호				변경
		788-4	전	155	155	이원준	목포시 옥암동 961, 965 금호타운 203동 305호				
26	화정면 개도리	산626	임	2,479	1,093	윤영구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43				기정
		산626	임	2,479	974	윤영구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43				변경
27	화정면 개도리	763	전	787	296	손찬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30				기정
		763-1	전	345	345	손찬모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30				변경
28	화정면 개도리	785-2	전	4,512	573	손영인	순천시 연향동 1347 동성아파트 105-406				기정
		785-5	전	728	728	손영인	순천시 연향동 1347 동성아파트 105-406				변경
29	화정면 개도리	산625	임	6,347	1,565	주지영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44				기정
		산625-1	임	1,857	1,857	주식회사새싹 연합부 동산	여수시 덕충안길 92, 502호(덕충동,오션블루오 피스텔)				변경
30	화정면 개도리	산624	임	4,760	488	임태웅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07				기정
		산624	임	4,760	393	임태웅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407				변경
31	화정면 개도리	산622-1	임	3,570	1,030	강기화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기정
		산622-1	임	3,570	873	강기화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변경
32	화정면 개도리	산623	임	2,380	758	김옥희	여수시 화정면 여석안길 16				기정
		산623	임	2,380	800	김옥희	여수시 화정면 여석안길 16				변경
33	화정면 개도리	산614-1	임	3,967	325	정연표	여수시 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7동 702호				기정
		산614-3	임	151	151	정연표	여수시 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7동 702호				변경
34	화정면	산613	임	18,149	2,912	임창민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기정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개도리						55, 203동 902호(신장동, 칠성푸르지오)				
		산613-5	임	2,885	2,885	임창민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203동 902호(신장동, 칠성푸르지오)				변경
35	화정면 개도리	산612	임	397	170	임정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375				기정
		산612	임	397	397	임창민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신성로 330, 214동 106호(공군아파트)				변경
36	화정면 개도리	산613-3	임	694	184	임창민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203동 902호(신장동, 칠성푸르지오)				기정
		산613-3	임	694	166	임창민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 55, 203동 902호(신장동, 칠성푸르지오)				변경
37	화정면 개도리	751-3	전	830	41	김상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9-18 우성빌라 202호				기정
		751-9	전	36	36	김상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9-18 우성빌라 202호				변경
		751-10	전	4	4	김상기	서울 강서구 화곡동 369-18 우성빌라 202호				변경
38	화정면 개도리	752-2	전	2,469	790	남창관	여수시 고소7길 2(고소동)				기정
		752-12	전	698	698	남창관	여수시 고소7길 2(고소동)				변경
39	화정면 개도리	752-1	전	258	210	김영선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2				기정
		752-1	전	258	258	김영선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882				변경
40	화정면 개도리	산610-2	임	1,881	199	정연표	여수시 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7동 702호				기정
		산610-9	임	237	237	정연표	여수시 여서동 43-12 경남아파트 107동 702호				변경
41	화정면 개도리	산603-1	임	5,256	10	최영숙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나길 32, 102호(화곡동, 승현하이츠빌)				기정
		산603-1	임	5,256	3	최영숙	서울 강서구 강서로17나길 32, 102호(화곡동, 승현하이츠빌)				변경
42	화정면 개도리	750	답	519	11	한성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529				기정
		750-4	답	1	1	한성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529				변경
43	화정면 개도리	산608-6	임	582	134		여수시				기정
		산608-11	임	220	220		여수시				변경
44	화정면 개도리	1749	도	178	12		국토교통부				기정
		1749-1	도	5	5		국토교통부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45	화정면 개도리		기타		1	미지번					기정
			기타		10	미지번					변경
46	화정면 개도리	749-1	전	849	44	강대봉	보성군 득량면 아랫상천길 19				기정
		749-6	전	52	52	강대봉	보성군 득량면 아랫상천길 19				변경
47	화정면 개도리		기타		99	미지번					기정
			기타		98	미지번					변경
48	화정면 개도리	749-4	전	58	58		여수시				기정
		749-4	전	58	58		여수시				변경
49	화정면 개도리	749	전	259	71		여수시				기정
						윤미영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19(신정동)				
		749-5	전	133	133	윤미영	서울 양천구 중앙로29길 19(신정동)				변경
50	화정면 개도리	749-3	도	45	45	문남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67				기정
						문기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123				
						문정보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83				
		749-7	도	44	44	문남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67				변경
						문기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123				
						문정보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83				
51	화정면 개도리	749-2	도	148	109		여수시				기정
		749-2	도	148	148		여수시				변경
52	화정면 개도리	산592-1	도	786	9	문남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67				기정
						문기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123				
						문정보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83				
		산592-1	도	786	5	문남기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67				변경
						문기준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123				
						문정보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1083				
53	화정면 개도리	산591-3	도	434	119		여수시				기정
		산591-8	도	154	154		여수시				변경
54	화정면 개도리		기타		31	미지번					기정
			기타		36	미지번					변경
55	화정면 개도리	748-1	도	449	22		여수시				기정
		748-2	도	76	76		여수시				변경
56	화정면 개도리	산591-2	도	188	14		여수시				기정
		산591-2	도	188	188		여수시				변경
57	화정면 개도리	1735	도	397	-		국토교통부				기정
		1735	도	397	2		국토교통부				변경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	편입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58	화정면 개도리	산608-8	입	3,408	-	정연식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725				기정
		산608-8	입	3,408	2	정연식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725				변경
59	화정면 개도리	751	전	1,160	250	조윤남	여수시 국동5길 28(국동)				기정
		751-5	전	250	250	조윤남	여수시 국동5길 28(국동)				변경
60	화정면 개도리	751-1	전	1,011	476	정삼수	경남 김해시 삼방동 179-1 국제쇼핑타운아파트 1101호				기정
		751-7	전	448	448	정삼수	경남 김해시 삼방동 179-1 국제쇼핑타운아파트 1101호				변경
61	화정면 개도리	751-4	전	1,002	550	이은정	여수시 화정면 개도중앙1로 14				기정
		751-11	전	552	552	이은정	여수시 화정면 개도중앙1로 14				변경
62	화정면 개도리	747-9	전	982	17	정연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741-1				기정
		747-17	전	16	16	정연수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741-1				변경
63	화정면 개도리	747-8	전	215	18	김도형	순천시 용당동 219 삼성아파트 8-1104				기정
		747-8	전	215	14	김도형	순천시 용당동 219 삼성아파트 8-1104				변경
64	화정면 개도리	747-13	전	1,150	145	김갑권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70				기정
		747-18	전	133	133	김갑권	여수시 화양면 안포리 470				변경
65	화정면 개도리	799-2	도	133	-	김석두	여수시 국동 800 중앙아파트 8-402				기정
		799-2	도	133	133	김석두	여수시 국동 800 중앙아파트 8-402				변경
합 계				126,825	22,663						기정
				57,913	23,779						변경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고시

여수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승인 신청 건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규칙」제2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2021. 4. 1.

여 수 시 장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공장증설용지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명 주소(변경없음)
 - 가. 성 명: KPX라이프사이언스(주) 양준영, 이기성
 - 나.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가. 사업의 목적: MPP-4, MPP-5 공장 및 지원시설 부지조성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가. 위 치: 여수시 화치동 237-20번지 일원
 - 나. 면 적: (당초) 56,978㎡ → (변경) 57,044㎡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2016. 6.24. ~ 2021. 12. 31.
6.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변경): 불임참조
7.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8. 국·공유지 관리처분계획(변경없음): 게재생략
9.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 불임참조
10.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지형도면 고시(변경없음): 게재생략
11. 관계도서는 여수시 도시계획과(☎ 659-401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m ²)		소 유 자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계				147,492	56,978			당초
				147,935	57,044			변경
1	월하동	17	도	48,466	2,042	국(국토교통부)		
2	월하동	455-14	입	14,051	14,051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3	월하동	455-16	입	632	632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화치동)	
4	화치동	58-2	도	5,571	2,844	국(건설부)		
5	화치동	66-2	도	5,995	261	국(건설부)		
6	화치동	226-1	잡	284	264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7	화치동	227-3	전	162	162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8	화치동	230-7	대	4,330	1,317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9	화치동	237-4	전	2,827	2,827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10	화치동	237-16	입	1,885	1,885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화치동)	
11	화치동	237-20	입	14,058	14,058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12	화치동	271	도	32,069	41	국(건설부)		
13	화치동	1184-17	도	11	1	국(건설부)		
14	화치동	1184-20	입	126	126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15	화치동	1184-21	도	8	8	국(건설부)		
16	화치동	산190-1	묘	7,131	7,131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17	화치동	산190-4	입	1,107	987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18	화치동	산190-6	입	1,904	1,904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19	화치동	산190-8	도	86	86	국(건설부)		
20	화치동	산190-9	묘	248	240	여수시		
21	화치동	산190-10	입	622	523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22	화치동	산191-1	묘	3,647	3,647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23	화치동	산191-5	도	406	75	국(건설부)		
24	화치동	산192	입	1,866	1,866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25	화치동	230-28	도	443	66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 2로 84(회치동)	추가

□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성명	주소	
합계		14필지		96,388	8,758			
1	월하동	17	도	48,466	2,042	국(국토교통부)	-	
2	화치동	58-2	도	5,571	2,844	국(국토교통부)	-	
3	화치동	66-2	도	261	261	국(국토교통부)	-	
4	화치동	226-1	잡	284	204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화치동	271	도	32,069	41	국(국토교통부)	-	
6	화치동	1184-17	도	11	1	국(국토교통부)	-	
7	화치동	1184-20	도	126	15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8	화치동	1184-21	도	8	8	국(국토교통부)	-	
9	화치동	산190-1	묘	7,131	35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10	화치동	산190-4	도	1,107	82	국(국토교통부)	-	
11	화치동	산190-8	도	86	86	국(국토교통부)	-	
12	화치동	산190-9	묘	240	240	여수시	-	
13	화치동	산190-10	임	622	523	KPX LS	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14	화치동	산191-5	도	406	75	국(국토교통부)	-	

공 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여 수 시 장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조항 신설(안 제2조)
 -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근거 마련
- 나. 회의의 비공개와 비밀 누설의 금지 조항 신설(안 제5조)

3. 입법예고기간 : 2021. 4. 1. ~ 4. 20.(2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여성가족과장)

- 전 화 : 061-659-5367 팩스 : 061-659-5822

- 이 메 일 : mysin25@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3조의 2에 따라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아동복지법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여수시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여수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사전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보호조치 후 사후에 심의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비공개) 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회의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위원회의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2016. 11. 11.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여 수 시 장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신규 설치한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 규정을 조례에 맞게 개정하여 효율적으로 시립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규정 개정(안 제2조)

- 대성베르힐 어린이집 신규
- 미평하나 어린이집 신축 및 명칭
- 꿈모아 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

나. 위탁계약 개정(안 제5조)

- 조항 개정

- 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별표 1(여수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개정

○ 별지 제3호 서식(여수시립어린이집 위탁계약서) 개정

- 제6조(위탁조건)

- ① 시설운영에 따른 모든 사항은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으로 이행 하되 보육교직원 임용권은 “수탁자”가 전보권은 “위탁자” 갖는다.
- ②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으로 한다.
- ③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교직원을 임용하고, 임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용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입소아동을 보육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를 준수하고 “위탁자”의 행정지시를 준수 하여야 한다.

- 제15조(위탁의 취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수탁자”에 대하여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운영을 포기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및「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 (위탁의 취소)에 해당될 경우

3. 입법예고기간 : 2021. 4. 1. ~ 4. 20.(2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여성가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여성가족과장)

- 전 화 : 061-659-3760 팩스 : 061-659-5822

- 이 메 일 : ys0504@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규칙」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립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 「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시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3조(운영의 위탁)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1. 위탁 공고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여수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위탁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개인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육아종합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상위 법령 및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① 어린이집과 센터의 운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하고자 하는 날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육교직원의 임용) ①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임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원장,보육전문가, 학부모대표, 관계공무원 등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을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서류전형 및 면접 등의 방법에 따르되 업무관련 지식, 업무수행능력, 인성·자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시장이 임면하고, 보육교사 등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이 임용하여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교직원의 전보)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을 재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1호는 임차기간 동안에만 그러하다.

1. 장기 임차를 통해 시립으로 전환한 어린이집
2. 도서지역(삼산면, 남면, 화정면)어린이집

제8조(어린이집 운영평가) ① 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위탁 심사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 위원회에 보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하반기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보육교사 평가) 시장은 원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육교사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4. 1.

여 수 시 장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 시 지원대상의 객관적 선정, 체계적 사업관리,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의 지원의 범위 및 기준을 정비함(안 제2조)

- 1)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범위에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 장비의 설치” 항목을 추가함.
- 2) 공동체 활성화 및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여수시와 공동주택이 분담해야할 지원한도비율(여수시 90, 공동주택 10) 기준을 마련함.
- 3) 보조금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여 동일단지 중복지원을 지양함.
- 4) 중복지원 제한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에서 1회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함. ※ 3), 4)는 2023년 이후부터 적용

나. 관리비용의 신청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 자부담능력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 1)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 현장조사 실시 후 사업의 적법성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함.
- 2) 객관적이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공동주택 준공 시기, 노후 정도, 대상별 특수성(긴급·안전·편의성) 등 정량적·정성적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함.
- 3) 지원 단지의 선정·심의 결과를 7일 이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공동주택 단지별 지원 금액은 지원한도비율 이내로 하며, 지원예산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조)

※. 매 년 지원예산으로 약 2,000~2,500백만 원이 책정됨에 따라 단지별 최대 지원 금액을 200~250백만 원으로 제한함.

마.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시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의 2)

- 1)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주체가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 교부신청이 어려울 경우 시장에게 연장신청 및 승인을 받도록 함.
- 2)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 교부를 결정하도록 함.
- 3)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총사업비가 2천2백만 원을 초과하고 자부담비율이 50%미만인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4) 사업자를 선정된 관리주체는 공사 착수 후 착수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 5) 관리주체가 사정 변경으로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금을 사용하도록 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하는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반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 3)

사. 공동주택 지원 사업 완료 및 조사·검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5조의 4)

1) 지원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관리주체가 사업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신청 단지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2)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

아.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내용 중 심의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추가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의2)

1)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함.

2) 지원위원회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 우선 지원을 고려하도록 함.

3) 시장이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1. 4. 1. ~ 4. 20.(2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1년 4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허가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 여수시청(학동)
- 받는사람 : 여수시장(허가민원과장)
- 전 화 : 061-659-4098 팩스 : 061-659-5836
- 이 메 일 : sjhr7@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관리비용 지원

제2조(관리비용의 지원 및 기준)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제1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검사일로부터 12년이 경과하지 않은 공동주택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나.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다.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라.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를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2.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단지 내 도로 보수

나.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다.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라.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마.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바.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개선

사.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증강

아.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자. 음식물 쓰레기 등의 배출·보관을 위한 생활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 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개선

차.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서 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삭제

② 여수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행복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전의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정된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중전의 제2조제2항에서 이동>

제3조(관리비용의 신청) 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삭제

제4조(관리비용의 지원결정)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신청자가 다수인 경우 공동주택의 준공 시기, 노후정도, 단지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별표2에 따라 심사 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의 부담) 해당연도 공동주택 단지별 보조금액은 별표1의 분담 비율

이내로 하며, 수립된 지원예산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5조의2(지원사업의 시행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요청한 범위에서 교부신청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관련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2천2백만원을 초과하고 자부담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2. 그 밖에 경쟁입찰이 필요하다고 관리주체가 판단하는 경우

⑤ 사업자를 선정한 관리주체는 해당 공사를 착수(관계 법령 등에 따른 허가, 인가,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해야 하며, 착수내용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의3(지원금의 사용) ① 관리주체는 관련 법령 및 지원조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지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아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2. 지원금을 사업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4.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의4(사업의 완료보고 및 조사 · 검사 등)

- 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이 완료(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용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보고하고, 공동주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 ② 시장은 사업 수행 및 완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 검사 및 확인하게 해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 검사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결정의 취소) ① 제2조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1항제4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제7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 및 관리비용 지원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주택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공동주택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 · 2 · 4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각 2명 이내,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 1. 여수시의회 의원
- 2. 관련 분야 공무원
- 3.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4. 토목 · 조경 · 건축학과 관련이 있는 대학교수

④ 삭제

- ⑤ 지원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지원위원회의 위

원장(이하 “지원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⑥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지원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주택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의2(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3.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금액
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2. 공공기관의 평가에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 우선 지원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지원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위원회 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지원위원장과 지원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지원위원장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활동과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임을 원할 때
3. 기타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장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제10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여수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대표자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4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련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전체 입주자(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입주자를 말한다) 10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 선정에 관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분쟁에 관한 증거자료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내용을 조정신청의 상대방(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의한 심의·조정서가 작성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의 반려 및 중지)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 신청을 반려하거나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관한 분쟁인 경우
2.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친 분쟁에 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
3. 소송 중인 분쟁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한 경우 또는 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분쟁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4. 조정신청의 상대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
5. 조정신청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반려 또는 중지된 경우 그 사실을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분쟁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전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분쟁당사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용 부담) ① 관계 전문가의 출석이나 자료요청 및 분쟁의 심의·조정애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부담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공무원의 출석·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제1항의 비용을 산출한 후 각 분쟁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을 결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분쟁당사자가 해당 금액을 그 위원장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였음을 확인한 후 조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조정이 반려·중지된 경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쟁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분쟁조정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등) ① 분쟁조정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에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한다.

③ 분쟁조정위원장은 분쟁의 조정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는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서기는 공동주택담당 팀장

이 된다.

제16조(운영 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쟁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제17조(감사의 요청) ①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감사를 요청하려는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사요청서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이 서명한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사 요청 동의서
3. 그 밖에 감사 요청과 관련한 자료

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감사 실시의 결정)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이하 “감사요청인”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를 요청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 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이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감사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할 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 기간 과 감사 범위
5. 감사에 필요한 예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 필요한 경우 감사반원에게 감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감사반의 구성) 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반을 구성·운영한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담당 과장이 되고, 반원은 공동주택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부서의 공무원을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전문감사관으로 위촉예정인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또는 주택관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21조(감사 실시) ① 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감사요청인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 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유의사항) 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감사 결과 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 실시 이후 처분 의견을 포함한 감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사 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을 감사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시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전문감사관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주민공동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1. 경로당(150세대 이상의 경우) : 50제곱미터에 세대 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어린이놀이터 :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면적

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제곱미터

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 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 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3. 어린이집 : 다음 각 목에 따른 영유아의 인원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시설면적

가.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영유아 21명

나. 500세대 이상 : 40명

4. 주민운동시설(500세대 이상의 경우) :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제26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복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 제5조 및 별표1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제3조에 따라 지원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제4조 및 제5조 관련)

1. 지원한도비율

가. 공동체 활성화 사업<제2조제1항제1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시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90	10	1.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2. 주민 쉼터 설치 및 보수	90	10	
3.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보수	90	10	
4.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 시설·장비의 설치	90	10	

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사업<제2조제1항제2호의 각 목>

지 원 사 업	시 분담률	공동주택 분 담 률	비 고
1. 단지 내 도로 보수	90	10	1.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
2.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보수	90	10	
3. 옥상, 외벽, 공용부분의 출입구, 승강기 보수	90	10	
4. 옥외 상하수도의 보수와 준설	90	10	
5. 장애인 편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90	10	
6. 자전거도로, 자전거 주차와 관련된 시설 설치·개선	90	10	
7.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증강	90	10	
8. 주차장의 증설과 보수	90	10	
9.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배출·보관을 위한 생활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친환경시설 및 택배물품 보관시설의 설치·개선	90	10	
10. 그 밖에 공동주택의 유지·개량에 관한 사업으로 여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0	10	

2. 지원제외 대상

- 가. 각종 시설물 신설 또는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항 제외)
- 나.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로 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경우
- 다.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동주택

- 라.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설
- 마. 지원신청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
- 바. 재개발 또는 재건축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단,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사. 지역주택조합 또는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단,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공사착공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위 기간 내 공사착공 시 지원금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지원가능)
- 아.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 평가 표준 심사표

분야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특점
정량 평가 (부서 평가) 70점	준공연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6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준공 후 12년 미만 경과한 공동주택 	10 8 6 4 2	
	국민주택 규모 세대비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100%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7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5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세대 30% 이하 	10 8 6 4 2	
	단지 규모(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0세대 미만 ■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1,000세대 이상 	10 8 6 4 2	
	보조금 지원 경과 연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지원 ■ 25년 이상 경과 ■ 10년 경과 15년 미만 ■ 5년 경과 10년 미만 ■ 5년 미만 	10 8 6 4 2	
	관리 투명성(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회계감사 실시 여부(의무) ■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의무) ■ 사업자 선정 시 경쟁 입찰 도입 여부(의무) 	각각 여 5 부 0	
	시책이행(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남도 관리규약준칙의 자체 규약 반영 여부(의무) ■ 지자체 시책(에너지절약, 재활용품, 음식물폐기물 등) 이행 ■ 경비원 업무 협약 체결(의무) 	각각 여 5 부 0	
정성 평가 (심사 위원) 30점	긴급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받고자 하는 시설의 노후·파손 상태 등 주민안전을 고려한 사업의 긴급성 	상 10 중 6 하 2	
	효과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 계획의 효과성, 주민 편의성 등 	상 10 중 6 하 2	
	필요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사업의 필수 공용 시설 여부, 다수 주민 사용시설 여부 등 	상 10 중 6 하 2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수선계획 반영 여부 	+5이내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관리 분쟁 및 민원 	-5이내	

※ 가점에 따라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100점으로 한다.

※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은 관리의 투명성, 시책이행 평가항목 중 (의무)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여"로 평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공동체 활성화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85㎡이하	85㎡이상
준공연도				

지 원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비(단위 :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지원신청액	자부담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총 계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사업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 리 사 무 소 장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계획서(현장사진, 사업비산출근거 등 관련 사항 포함), 자부담능력 입증자료(장기수선충당금 통장 등), 사업의 성실추진 서약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지원신청)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단위:천원)	합 계	지원신청액	자 부 담	자부담률(%)	
2. 사 업 내 용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3. 사 업 비 산 출 기 초	<input type="radio"/> 별지 작성 가능					
4. 보조금 조달 계 획	부 담 자 명					
	부담자 주소					
	부 담 금 액					
	부 담 방 법					
5. 보조사업효과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7. 이 전 보조사업 실적	사 업 명				지원연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자 부 담	천원
	사업효과					

사 업 의 성 실 추 진 서 약 서

위 공동주택 지원사업 지원신청 및 선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및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으며, 지원사업으로 선정 시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1년 월 일

서약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 리 사 무 소 장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교부신청)

1.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 업 비 (단위:천원)	합 계	지원신청액	자 부 담	자부담률(%)
2. 사 업 자 선정방식					
3. 세 부 추진계획	○ ○				
4. 사 업 내 용	○ ○				
5. 사 업 비 산출기초	○				
6. 보조금 조달 계 획	부 담 자 명				
	부담자 주소				
	부 담 금 액				
	부 담 방 법				
7. 보조사업효과					
8.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은 사업종료 후 실적비로 비율정산 지급.				

[별지 제6호 서식]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사업 보조금교부 연장신청서 (<input type="checkbox"/> 공동체 활성화 <input type="checkbox"/>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신청단지	공동주택명			연 락 처	
	주 소			동수/세대수	동 세대
사업명					
사업기간	당 초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변 경	착수예정일	년 월 일	완료예정일	년 월 일
지원액 (단위:천원)	총 액		자부담		지 원 액
연장사유	※ 구체적으로 기재(내용이 많을시 별첨)				
「여수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위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보조금교부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서명 또는 인) 관 리 사 무 소 장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7호 서식]

공사계약 심사요청서

공 사 명		요청기관 (아파트명)	
공사위치		예 산 액	합 계 : 천원 보조금 : 천원 자부담 : 천원
공사기간		계약방법	
공사금액			
설 계 자	· 상 호 : · 책임기술자 :	· 대 표 자 : (전화번호 :)	
발 주 처	· 담 당 자 :	(전화번호 :)	
<input type="checkbox"/> 공사개요			
<input type="checkbox"/> 첨부서류 1. 설계도서 각 1부 (원가계산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견적서 포함), 수량산출서) 2. “1”의 설계도서 전산파일(내역서 등은 자동연산 조치된 엑셀변환 파일)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서

신청자(명칭)		대표자		
소재지(주소)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단위 : 천원)				
총 소요액	자부담	보조금	기타	
			비고	
사업기간				
사업계획				
사업효과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보조사업 (민간사업)의 계약대행 신청	사업명			
	사업비	계	보조	자담
	사업내용			
	자부담금 예치			
	계약대행신청	신청		
<p>「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대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p> <p>여수시장 귀하</p>				

착 공 계

공 사 명	
위 치	
사 업 규 모	
교 부 결 정 액	
계 약 금 액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시 행 방 법	자격업체 선정후 시공
시공자 주소성명	
비 고	
<p>위와 같이 착공되었기 보고합니다.</p> <p>2020년 월 일</p> <p>신청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p> <p>여 수 시 장 귀하</p>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_____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여수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 하겠으며, 귀 여수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 하고 귀 여수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_____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_____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관리소장 성명 _____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경리주임 성명 _____ (서명)

※ 민간단체로부터 징구한 청렴 이행서약서는 **부서에서 원본을 3년간 내부적으로 관리**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사·도 보조금	사·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 . .

지방보조사업자 : _____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_____ (서명)

준 공 계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시 행 방 법	자격업체 시공
시공자 주소성명	
비 고	
<p>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보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00px;">2021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p>	
<p>여 수 시 장 귀하</p>	

준 공 계

공 사 명	
위 치	
사 업 량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착 공 년 월 일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년 월 일
비 고	
<p>위와 같이 준공되었기 보고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250px;">○○○ 건설 (인)</p> <p style="text-align: center;"><u>입주자대표회의 회장</u> 귀하</p>	

공사감독관 감독조서

공사명 :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현장감독한 결과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액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공사 감독관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준공검사 조서

사 업 명							
시 공 자							
계 약 금 액							
준 공 금 액							
계 약 일	2021년	월	일	준공기한	2021년	월	일
착 공 일	2021년	월	일	준 공 일	2021년	월	일
준공검사일	2021년 월 일						
비 고							

위 공사의 준공검사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하며 다만, 수중·지하 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한 후 매몰된 부분의 조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

2021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사 진 대 장

공 사 명	
위 치	

[별지 제18호 서식]

청 구 서

금 액 : 金 원정(₩ 원)

상기 금액을 000아파트 000공사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함.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0 0 0 (인)

여 수 시 장 귀하

송 금 의 퇴 서

금 용 기 관	보 조 금 액	계 좌 번 호

2020년 00아파트 공사 보조금을 상기 계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0 0 0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정 산 보 고 서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00아파트 주차장 포장공사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집행하였기에 정산 보고 합니다.

2020년 월 일

000아파트 자치회장 (인)

여 수 시 장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보 조 금 집 행 내 역

(단위 : 원)

품 명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별지 제23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심의·조정서

조 정 건 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일 자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조정의결내용					
<p>「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심의·조정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위원장		(서명)	위원장		(서명)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24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 심의·조정 통지서

조 정 건 명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신 청 일 자		조정일자	
조정신청내용			
심의·조정 내용			
<p>「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 사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내용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별지 제25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반려·중지)통지서				
조 정 건 명				
신 청 일 자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피 신 청 인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분 쟁 조 정 신 청 내 용				
분 쟁 조 정 반 려·중지 사 유				
<p>「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본 건의 분쟁 조정을 반려·중지함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여수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별지 제26호 서식]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출석 요청서

조정건명				
신청인		피신청인		
분쟁조정 신청내용				
출석대상자	성명	주소	연락처	비고 (참고인, 당사자)
출석일자	년 월 일(:)			
출석장소				
<p>「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 조정 건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을 청취코자 출석하니 여수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여수시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p>※ 유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본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27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p>※ 감사 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p>			
기 타	※감사 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p>「여수시 공동주택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요청인 대표 (인)</p> <p>여수시장 귀하</p>				
첨부서류	<p>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p>			

[별지 제28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일

여 수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 가. 용역명 :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마. 용역비 : 금1,021,1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바. 입찰 예정 시기 : 2021년 4월중(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측량 분야 요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에서 “토질·지질” 전문 분야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반조사 분야 요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 상(가~라)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다~라)항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시에는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사.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시 지역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	지질조사	비 고
90.56%	4.64%	4.80%	설계예산서 비율

- 아.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 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자.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가. 작성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같음(별도교부 없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시 및 등록 장소

- 일 시 : 2021년 4월 15일(월요일, 09:00~18:00까지)
- 장 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061-659-4913)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함.

라.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대표회사 공문서 포함)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업무중복도, 자기평가서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 사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시) 원본 각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0-379호)」을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교부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 후 별도 통보합니다.
- 다. 단,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하여 재공고할 수 있으며,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라.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34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및 기술자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및 기술자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바.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시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시는 등기부등본상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표자의 인감, 위임장,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평가서 작성 지침에 따라 자격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행정안전부 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 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내용」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마.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 이 공고문, 평가기준, 작성안내서에 대한 해석은 우리시의 해석에 따릅니다.
- 사. 기타 용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상수도과(☎061-659-49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 본 기준은 전라남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전라남도 공고 제2020-379호)관련 상수도분야의 작성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1. 04.



여 수 시
(상 수 도 과)

목 차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I. 총 관	3
II. 분야별 평가기준	4
III. 일반사항	14
IV.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7

설계 등 용역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27
II.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가. 표 지 (양식 1)	31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참여확약서 (양식 2)	31
다. 과업 참여기술인 조직 (양식 3)	33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양식 4)	34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5)	38
바. 신용도 (양식 6)	40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 7)	42
아. 업무중복도 (양식 8)	44
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양식 9)	46
차.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양식 10)	47
카.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11)	48
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양식 12)	51

설계 등 용역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I. 총 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등급	3.0	상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 최근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
	경력	4.0		
	실적	5.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등급	4.0		
	경력	7.0		
	실적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등급	4.0			
경력	5.0			
실적	5.0			
교육훈련, 전차용역	2.0	절대평가		
교육훈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 전차용역 참여실적 	
전차용역	1.0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 전차용역 참여실적 • 용역수행성과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용역사업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재정상태 건실도	3.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 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4.0			
분야별참여기술인	2.0			
실무기술인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II.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기술자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15	. '건설기술자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3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점 수							3.0	2.4	1.8		
	경력	4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 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점 수	4.0	3.6	3.2	2.8	2.4					
	실적	5	. 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용역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 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용역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3년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5. 하수도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점 수	5.0	4.5	4.0	3.5	3.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용역 관련 경험, 용역수행상 주안점, 용역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용역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3.0	2.7	2.4	2.1	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4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구 분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계	4.0		3.2		2.4
	경력	7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계	7.0	6.3	5.6	4.9	4.2
	실적	8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계	8.0	7.2	6.4	5.6	4.8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 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자 점수의 합 / 참여기술자의 수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등 급	4	. 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 분	중급 이상			초급		
			계	4.0			3.2		
	경 력	5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계	5.0	4.5	4.0	3.5	3.0	
	실 적	5	. 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 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계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용역 수행실적 교육 훈련	2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 차 용 역 수 행 실 적	1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은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 책임기술인이 금차용역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용역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용역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상수도분야로 제한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책 임 기 술 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전차용역 : 여수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2019.12) * 2개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용역비율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기술인 참여용역 비율/전체 용역)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용역사업자	15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 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용역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 용역						
	실	적	6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 적 건 수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금	액	6	. 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 적 금 액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점 수	6.0	5.4	4.8	4.2	3.6
	전 차 용 역 수 행 실적	1	. 참여업체의 전차용역은 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 분			용역완료 후 3년 미만	용역완료 후 3~5년 미만	용역완료 후 5~10년 미만	용역완료 후 10년 이상			
점 수			1.0	0.8	0.6	0			
용역수행성과	2	- 점수 = 배점 × 전차용역참여지분율 × 당해용역참여지분율 × 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전차용역 : 여수시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2019.12)							
		* 2개이상 용역을 통합한 경우 용역비율 적용 평가 - 점수 x 용역비율(해당기술인 참여용역 비율/전체 용역)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용역평가는 건진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용역의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미”를 부여						
			구 분	수	우	미	양	가	
			점 수	2.0	1.8	1.6	1.4	1.2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신 용 도	영 업 정 지 (업 무 정 지), 별 점 등	10 7	.용역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 →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누계평균 별 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감 점	-0.2	-0.5	-1.0	-2.0	-3.0	-5.0		
	재 정 상 태 건 실 도	3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 사 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 업 어 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 업 신 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 수	3.0	2.8	2.1	0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용역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 개발 및 투자 실적	개 발 실 적	15 2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 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 분	배 점 (건당)	경 과 기 간 가 중 치				
					5년 미만	5~10년미만	10~20년미만		
			신 기 술	2.0	-	-	-		
			특 허	1.0	100%	80%	60%		
			실 용 신 안	0.5	100%	8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투 자 실 적	10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 용 실 적	3	<p>-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p> <p>.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p> <p>.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p> <p>.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p> <p>- 건설신기술 : 1.0점/건</p> <p>-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p> <p>-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p>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활 용 건 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 용 금 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마. 업무중복도		10	<p>. 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용역의 과업기간 합산</p> <p>-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용역이 해당됨.</p> <p>-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용역,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은 미합산한다.</p>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Ⅱ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 평 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인, 분야별참여기술인 5인, 실무기술인(전원)						
		. 방 법 : 용역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용역기간×100)에 따라 평가						
		※ 용역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용역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용역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용역의 용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용역 24개월, 수행중인용역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용역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 업 책임 기술 인	3	.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3.0	2.7	2.4	2.1	1.8
분 야 별 책임 기술 인	4	. 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4.0	3.6	3.2	2.8	2.4			
분 야 별 참여 기술 인	2	. 분야별 참여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수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2.0	1.8	1.6	1.4	1.2			
실 무 기 술 인	1	. 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1.0	0.9	0.8	0.7	0.6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p>-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p>*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p> <p>*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p> <p>*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p>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p> <p>-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p>											
젊은 기술인 참여			<p>-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용역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용역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p> <table border="1" data-bbox="453 994 1394 1128"> <thead> <tr> <th data-bbox="453 994 1053 1088">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th> <th data-bbox="1053 994 1166 1128">5%이상</th> <th data-bbox="1166 994 1281 1128">3%이상</th> <th data-bbox="1281 994 1394 1128">1%이상</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3 1088 1053 1128">가점</td> <td data-bbox="1053 1088 1166 1128">0.2점</td> <td data-bbox="1166 1088 1281 1128">0.15점</td> <td data-bbox="1281 1088 1394 1128">0.1점</td> </tr> </tbody> </table>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 중 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267호(2020. 3. 10)]에 의하여 전남 道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용역업체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용역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은 반드시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시스템”에 용역 수행 중 등 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전차용역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용역회사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 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 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 등
 -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전체 백분율의 $\pm 10\%$ 포인트 범위내에

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인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 공동도급시 지역용역회사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용역회사 중에서 반드시 평가 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A사 70%, B사 30%

평가인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1명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B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평가인원(실무기술인) 25명

- A사(60%~80%) = 15명~20명
- B사(20%~40%) = 5명~10명

-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 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 허위자료 제출 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IV.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용역수행성과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지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지 “미”의 점수를 부여한다.

※ 용역성과가 없는 업체는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서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업체가 환경부(산하기관 포함), 전라남도, 여수시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건설기술 용역의 “건설기술용역평가” 결과(산술평균)로 상대평가 한다.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contems)에서 제공된 설계용역 평가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자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

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용역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용역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용역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용역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업체 유사용역 실적평가지 ‘14.5.23. 이후 계약 용역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용역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5점, 분야별 책임 19점, 분야별 참여 14점, 용역사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6.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용역은 참여기술인 실적 및 회사 유사용역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용역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기술용역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기술용역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용역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용역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 실적·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에 용역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을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2. 해외설계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용역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용역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에 대하여 당해

설계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용역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공종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 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는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18.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시에도 동일한 인원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9. 설계 등 용역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용역에의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인의 범위 (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3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 2) 건설기계 3) 용 접 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전자	1) 철도신호 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지질 3) 항만 및 해안 5) 철도·삭도 7) 상하수도 9) 토목시공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2) 토목구조 4) 도로 및 공항 6) 수자원개발 8) 농어업토목 10) 토목품질관리 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 3) 건축시공 5) 건축품질관리	2) 건축기계설비 4) 실내건축 6) 건축계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	2) 광산보안
바. 도시·교통	1) 도시계획	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	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 3) 가스	2) 소방 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 3) 소음진동 5) 자연환경 7) 해양	2) 수질관리 4) 폐기물처리 6) 토양환경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재무 3) 건설마케팅	2) 건설기획 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전문분야별 국가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 지분을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을 활용)				
III.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 . . .</p> <p>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인)	
발주처					
공사명					

설계 등 용역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용역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 1) 용역명 :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2) 과업량 : 과업지시서 참조
-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평가서 작성

- 1) 규격 및 제본
 - 규격 : A4(10절)
 - 지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본 : 양면 좌철
-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
(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
 - ※ SOQ 대상 용역은 작성치 아니함.
- 3) 제출장소 :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상수도과

라. 참가자격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2)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등용역)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하고 해당 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측량 분야 요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에서 “토질·지질” 전문 분야에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지반조사 분야 요건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와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5) 상기(1 ~ 4)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3 ~ 4)항의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 구성업체는 대표사 포함하여 5개 이내의 업체로 구성하여야 하고 대표사

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6) 도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자치부 예규)」중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이 부여되며, 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시에는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7)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시 지역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	지질조사	비 고
90.56%	4.64%	4.80%	설계예산서 비율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상하수도)

. 분야별 기술인

- 분야별 인원 : 4개 분야(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인

. 분야별참여기술인 : 4인

. 실무기술인 : 20인('업무중복도'항목에 한하여 평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발주청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II.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 참고서식 >

양식 1

가. 표 지

○ 설계 ○ 계 ○ 상 용 ○ 수 도 역	<p>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 <p>- 사업수행능력평가서 -</p>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p>20</p>
(주) ○ ○ ○ ○ ○ ○ ○ ○ ○ ○ ○ ○ (주)	<p>(주) ○ ○ ○ ○ ○ ○ ○ ○ (주)</p>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 협약서

본인은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하고자 별첨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 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 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첨 부 : 1.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20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여 수 시 장 귀하

다. 과업 참여기술인 조직



※ 평가분야는 해당 용역에 적합토록 조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 사업책임기술인 (1인) : 상하수도
- . 분야별 책임기술인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 . 분야별 참여기술인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 . 실무기술인 (20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양식 4

라.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

평가대상 기술인 개인별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 급	최종학력 (학위)	자 격 증			경 력 (년수)	실 적 (건수)
					자격증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양식 4-3-①항의 해당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양식 4-3-②항의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용역의 건수를 기재
- .상기 란에 기재된 평가대상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실무기술인별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비 고	
실무기술인						

(주)

-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첨부
- .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시에도 동일한 인원만으로 구성하여 적용

□ 평가대상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 ○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졸 업 년 월 일		기술인 등 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① 해당 분야 경력		일 (년 월)	② 해당용역 실적건수		건		
실 적 사 항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계약금액	계약기간 년월 ~ 년월 (일)	참여기간 년월 ~ 년월 (일)	비 율 (참여기간/ 계약기간)	발주청	적용 건수
해당 분야								
유사 분야								

(주)

-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 평가대상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사항은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 전문분야의 총경력 ①을 명기하되, 연월일을 중복 기재하지 말 것
- . 해당용역 참여건수②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 용역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용역 등 종류별로 명기
-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를 분류하여 작성할 것
- . 기술인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 참여기간은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개인별 참여기간을 명기
- . 참여기술인은 용역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 해당용역 참여건수에 대한 용역실적증명서 첨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주)	교육훈련기관	업 체 명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참여기술인 전차용역 수행실적

분 야	성 명	용역명	용역개요	참여기간 (단위:월)	전차용역 참여형태	비고

(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
주청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마.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지분금액)	발 주 청	지 건	분 수
계	건						

(주)

-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 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 공동도급인 경우는 준공금액란에 총 금액()과 해당회사 지분율 금액을 구분하여 명시하고 해당회사의 금액을 합산 집계
 -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용역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범위내
 - 단, 해당용역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전차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연 도	용 역 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발 주 청	비 고

(주) 전차용역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처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 용역수행성과

(단위 : 백만원)

연 도	발 주 청	용 역 명	용역공종	용역기간	용역금액	평 가 수	비고

(주) 용역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 공문 등 첨부

양식 6

바. 신 용 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 용역사업자

회 사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용 역 명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비 고
계					

○ 참여기술인

참 여 기 술 인			용 역 명	제재기관	제재사유	기술자격 정지기간 (개월)	업무정지 처분기간 (개월)
분야	성 명	참여기간					
계							

○ 벌점

구 분	회 사 명 (기술인명)	누계평균 벌점	비고

-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 과징금이 있을 경우 별도 표시

2)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1. 회 사 명		
2. 설 립 년 도		
3. 자 본 금		
4. 신용평가기관		
구 분	평 가 등 급	비 고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
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사.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실적

○ 개발실적

구 분	건 명	기술종류	내 용	유효기간 (경과기간)	등록권자	참여 지분율	점수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2) 투자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구 분	① 20	② 20	③ 20	평 균 ①+②+③/3
건설기술개발투자액				
건설부분 총매출액				
기술개발투자비율				

- (주).최근 3년간 건설부분의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대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한하여 인정)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대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용역참여 지분율 기재

3) 활용실적

구 분	활 용 실 적 명 칭 (번 호)	활용건수 (단위 : 건)	활용금액 (단위 : 백만원)	점수
신 기 술				
특 허				
실용신안				

(주)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양식 8

아. 업무중복도

구	분	성명	용역명	사업 개요	용역 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사업참여기간	
									참여 분야	참여 기간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 별 책임 기술인										
분야 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 . 본 과업의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수행 중인 용역사업 기재
-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대상용역 전체 기재
-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단, 실무기술인 제외)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신규 고용인원(명)	직전년도 평균 고용인원(명)	신규 고용율(%)	참여지분율 (%)	비 고

(주)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frac{\text{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text{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10

차.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성명	해당 참여 인원수(인)	전체 참여 인원수(인)	참여비율 (%)	비 고

(주)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카.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

(주) ○○○○○○○○○
○○○○○○○○○ (주)

1. 기술능력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 업 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 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타.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내용	점수	비고
합 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등급	3.0	작성제외		
	경력	4.0			
	실적	5.0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등급	4.0			
	경력	7.0			
	실적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등급	4.0			
	경력	5.0			
	실적	5.0			
	교육훈련,전차용역	2.0			
	교육훈련	1.0			
	전차용역	1.0			
		15.0			
나.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6.0			
	금액	6.0			
	전차용역	1.0			
	용역수행성과	2.0			
		10.0			
다.신 용 도	영업정지 (업무정지),벌점 재정상태 건설도	7.0 3.0			
		15.0			
라.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2.0			
	투자실적	10.0			
	활용실적	3.0			
		10.0			
마.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3.0			
	분야별책임기술인	4.0			
	분야별참여기술인	2.0			
	실무기술인	1.0			
바.가점	건설기술인신규고용 젊은기술인참여				

※ 필요시 세부평가서 첨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정정공고

조달청 용역공고 제20210354791-02호

조달청 용역공고 제20210354791-02호로 공고한 전라남도 여수시 상하수도사업단 수요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연번	당 초	정 정	정정내용
1	<p><input type="checkbox"/> 공고문</p> <p>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p> <p>가.</p> <p>나.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상위 10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p> <p>다. 단,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p> <p>라.</p> <p>마.</p>	<p><input type="checkbox"/> 공고문</p> <p>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p> <p>가.</p> <p>나.평가결과 일정점수(88.64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p> <p>다. 단,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8.64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통지 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p> <p>라.</p> <p>마.</p> <p>바.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상위10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기준 삭제</p> <p><input type="checkbox"/> 일정점수 87.50→88.64정정 (추정가격 10억미만용역 적격심사 통과점수 95점이상 적용)</p> <p><input type="checkbox"/> 누락된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 평가기준 추가</p>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1. 04.



여 수 시
(상 수 도 과)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명	4
2. 과업의 목적	4
3. 과업 대상 지역	4
4. 과업개요	4
4.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4
4.2 관련계획 조사	4
4.3 조사측량	4
4.4 지질조사	4
4.5 기본 및 실시설계	4
4.6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 1식	5
4.7 설계의 경제성, 설계자문 등 검토	5
5. 과업수행기간	5
6. 일반사항	5
6.1 과업의 준수사항	5
6.2 공정계획 및 보고	6
6.3 관계기관 협의 등	7
6.4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7
6.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필요시)	7
6.6 하도급 사항	8
6.7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8
6.8 과업의 변경	9
6.9 보안대책	9
6.10 기 타	9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역	11
1.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1
1.2 관련계획 조사	11
1.3 현지조사	11
1.4 기본계획 검토	11
1.5 기본 및 실시설계	11
1.6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1
1.7 성과품 제출	11
2. 과업수행 지침	12
2.1 일반사항	12

가. 기본지침	12
나. 적용기준 및 기술	13
3. 과업수행방법	13
3.1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13
3.2 현지조사	14
3.3 기본계획 검토	16
3.4 기본 및 실시설계	17
3.5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	21
3.6 사업집행계획 수립	21
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21

제 1 장 총 칙

1. 과업명 :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죽림지구 및 소제지구 지역 내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고자 「죽림 및 심곡배수지 증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지역 : 여수시 죽림지구 및 소제지구 일원

4. 과업개요

본 과업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자료의 수집분석, 조사측량 및 지질조사 등을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효과적이고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4.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4.2 관련계획 조사

- 가. 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분석
- 나. 기타 관련계획 조사

4.3 조사측량

- 가. 지형현황 측량 $A=36,700\text{m}^2$ (죽림, 심곡 배수지 관련 측량)
- 나. 수도노선 측량 $L=5,300\text{m}$
(죽림배수지 계통 $L=1,830\text{m}$, 심곡배수지 계통 $L=3,470\text{m}$)

4.4 지질조사

- 가. 배수지 및 가압장 지질조사 : 6공
- 나. 관로 지질조사 : 5공

4.5 기본 및 실시설계

- 가. 배수지 : 2개소(죽림배수지 $V=3,900\text{m}^3$, 심곡배수지 $2,900\text{m}^3$)
- 나. 가압장 : 2개소(죽림, 소제)
- 다. 송·배수관로 : 죽림배수지 계통 $L=1,830\text{m}$, 심곡배수지 계통 $L=3,470\text{m}$
- 라. 부대시설

4.6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 1식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나. 수도사업인가 등 기타 인허가서류 작성 등

4.7 설계의 경제성, 설계자문 등 검토

5.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는 협의하여 용역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5.1 과업수행 중 정책적인 변화가 있을시

5.2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3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행정절차상 용역기간이 추가 소요될 경우

6. 일반사항

6.1 과업의 준수사항

가. 과업수행 기준

환경부의 상수도시설기준 등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지방서 및 표준도 등을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수도법시행규칙

2)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3) 상수도 시설기준[유지관리편](환경부)

4) 하수도 시설기준(한국상하수도협회)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6)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및 지침 등

나. 자료의 참고 등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나 각종지방서, 각종 기준, 지침 및 외국의 자료 등을 참고 또는 인용 할 때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한다.

예) 1) 미국수도협회(A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2) 일본수도협회(JWWA)관련 지침 및 기준(발행년도, 출판사 및 저자)

- 다.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기준 또는 지침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 등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라.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가, 나, 다” 항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자료, 기술진단 자료 등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야 한다.
- 마. 기타 발주청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6.2 공정계획 및 보고

- 가. 본 과업은 여수시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2) 예정공정표
 -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 다.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과업수행계획서와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명기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 라. 과업기간 중 매월 말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제출하며 과업수행 중 해결 할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별도 보고한다.
- 마.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하고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한다.
- 바. 계약상대자는 착수·중간·완료보고회 등을 통하여 기술자문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사.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이행요청서상 문맥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의견을 따른다.
- 자. 본 과업수행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과 기타 필요한 부분은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첩에 정리, 원판과 함께 제출한다.
- 차. 본 용역에 참여하는 전문기술자는 충분한 전문지식과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춘 자로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한다.

6.3 관계기관 협의 등

-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관련기관 협의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세부설계 수행 전에 각종 지장물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행한다.

다. 주민공청회 및 관련기관 협의가 필요할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한다.

6.4 설계자문 및 기술심의

가. 본 과업은 건설기술심의(또는 설계자문심의를)를 받아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설계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자문회의 및 기술검토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자에게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발주자가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회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6.5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설계VE 필요시)

가. 계약상대자는 설계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경제성 검토시에는 가능한 초기 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별 추진 공정이 30 ~ 70%일 때 발주자가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설계개념 발표 및 VE제안서에 대한 의견개진 등 설계VE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VE 검토팀의 검토에 필요한 설계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결과 승인된 VE제안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6 하도급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하도급 범위 내에서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발주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 3)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1)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 2)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라. 책임한계
-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6.7 신기술·신공법의 도입 등

-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 나. 계약상대자는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설계 심의 등을 통하여 적정하다는 판단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 다. 타인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및 신기술 등의 권리를 사용할 때에는 그 기술의 사용에 이상이 없도록 적당한 근거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8 과업의 변경

- 가.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나.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 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기간 등을 변경한다.
- 다.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계획과 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시
 - 인허가와 관련하여 추가 과업이 필요할 시
- 라.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과업을 수행하며 경비를 최소한으로 절감하는데 모든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
- 마. 사업인가 및 설계심의 등 각종 승인 및 인가에 필요한 도서를 제작하며,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품의 미비 및 보완사항이 발생 할 경우 보완 제출한다.

6.9 보안대책

- 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대표자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 나. 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
-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진다.
- 라. 본 과업수행 수행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한다.
- 마. 과업수행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며,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포함)가 발생했을 경우 손해배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보상 또는 원상복구 등을 시행한다.

6.10 기 타

-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문맥 해석 등에 대하여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나. 본 과업수행 중 계약자는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편의를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 다.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진국 기술의 견학 및 자료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시행, 자료를 분석하여 본 과업의 성과물에 반영, 수립한다.
- 라. 수급인과의 업무한계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도급일 경우 수급인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 마. 환경부 승인 등 관계기관 협의시 심사 및 협의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역

1.1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1.2 관련계획 조사

1.3 현지조사

가. 지장물 조사

나. 조사측량

다. 지질조사

1.4 기본계획 검토

1.5 기본 및 실시설계

1.6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1.7 성과품 제출

본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과업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작성 제출하되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명	제출수량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10부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10부
(3) 구조 및 수리계산서	10부
(4) 각종 공사시방서	10부
(5) 설계도면(A3, 축소도면)	10부
(6) 설계서	
- 수량산출서	10부
- 단가산출서	"
- 설계예산서	"
(7) 기타 성과품	1식
(8) 성과품 CD	1식

2. 과업수행 지침

2.1 일반사항

가. 기본지침

-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 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3)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5)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6)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 (7)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 (8) 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 (9)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10)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지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적용기준 및 기술

-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조서 및 관망도 작성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상수도시설기준(환경부)
- 2)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 3) 우수율 제고사업 추진 매뉴얼(환경부)
- 4)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 5)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 6) 상수도 배급수 시스템 수질관리 매뉴얼(AWWARF)
- 7)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 8) 우수율제고 업무처리 규정(’01. 2, 환경부)
- 9) 상수관망 최적관리 기술안내서(환경부)
- 10)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부)
- 1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12)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 13) 밀폐공간 작업안전 매뉴얼(안전보건공단)
- 14)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방법

3.1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가.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1) 일반현황 자료조사

- 기 수립된 “여수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여수시)” 의 계획지표 및 시설계획 등 관련내

용을 검토 후,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본 과업에 반영한다.

- 자연적 조건인 지형, 기온, 풍향, 풍속, 강우 등의 조사와 사회적인 특성인 행정구역, 인구현황, 지역경제, 산업계획 등의 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2) 상수도 현황조사

- 기존 상수도 시설물 현황 및 운영현황 조사

나. 관련계획 조사

- (1) 도시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2)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각종 상수도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3) 현지조사시 지형, 표고, 주변현황 및 지장물 위치를 파악, 시설물 위치 검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4) 기타 관련계획 및 상위계획을 조사 검토하여 본 과업 수행에 반영한다.

3.2 현지조사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시행함에 있어, 기 시행 완료 용역의 측량조사 성과와 지반조사 성과를 검토하여 최대한 활용하되, 다음의 항목 및 감독관이 지시하는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 된 설계가 되도록 한다.

가. 조사측량

(1) 지형현황측량

- 축척 1 : 1000으로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며, 삼각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기본 수준점 성과를 이용하여 배수지 확장 부지에 매설한 표석의 수준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래 시공시 측량성과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위치에 3개소 이상의 표석을 매설하고 삼각측량성과 및 수준측량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관로노선 측량

- 관로노선 측량의 축척은 1 : 1000으로 시행하며 관로의 측점거리는 100m로 하되 종단의 변화가 심한 곳은 반드시 중간 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로노선 측량의 측량폭은 좌우 10m 이상으로 하고, 관로노선 주위는 평판측량을 시행하며 구조물, 지형변화 등을 상세히 표시하며 지하매설물도 동시에 조사하여야 한다.

(3) 용지도 작성

- 배수지 및 가압장 신설부지, 송·배수관로에 대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 본 조사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및 측량표준품셈에 의한다.
- 수준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한다.
- 측량구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나. 지질조사

(1) 조사일반

- 지질조사는 신설되는 구조물 및 관로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에 의거 시행한다.
- 모든 지질조사는 조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감독관은 조사과정에 이상이 있거나 조사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이에 응하고, 제반조사를 취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추조사

- 용역자는 확정된 시추지점을 도면에 표시하고 표고 및 좌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시추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타 부득이한 경우는 상호협의 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표준관입시험은 지층이 변하는 지점 등 KSF-2307 규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시추공의 규격은 NX로 한다.
- 시추심도는 계획굴착고 또는 연암층 이하 1.0m까지 시추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 및 기타 상황에 의거 감독관이 이를 변경지시 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굴진작업이 완료되면 시추공내의 안정된 지하수위를 측정, 기록하여야 한다.
-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추공은 지하수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폐공관리 통합지침에 의거하여 폐공처리 하여야 한다.
- 채취된 토질시료 및 Core는 시료 상자에 채취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자는 현장조사시 자격을 갖춘 토질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 지질조사 작업은 KS, ASTM 및 관련 지방서의 규정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하고, 실제조사 결과에 따라 정산하며, 과업 수행 과정을 촬영하여 사진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실내시험은 함수비, 입도시험 등 토성시험을 한다.

다. 보상조사

- 수도시설 설치를 위하여 보상이 필요한 토지, 가옥, 구조물, 분묘 등 보상물건에 대하여 토지대장, 관련공부현황과 인근거래가격,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보상비를 산정하고 지적도 및 측량결과에 따라 보상용지도를 작성한다.

3.3 기본계획 검토

가. 기본계획 검토

- (1) 기 수립된 여수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여수시)의 계획지표 검토
- (2) 기 검토사항 및 수정사항을 기본으로 도상작업 및 개략적으로 선정된 계획시설물들의 위치에 대하여 상세한 현지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급수수요량 및 공급방안 검토

(1) 급수수요량

- 급수대상 지역별 시설의 현황 및 이용실태 자료를 수집하여 현황을 분석한다.
- 급수수요량은 인구증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 기타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산정하여야 한다.
- 급수공급지역의 지역특성을 고려, 수요 부하 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공급방안 수립

- 본 과업급수대상 구역의 시설물(배수지, 가압장 및 관로) 시설제원, 급수체계, 공급량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수도공급 체계 및 용수배분상 불균형 등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야 한다.
- 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기존시설과의 연계 공급방안을 검토하여 구조물 및 공급관로의 최적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수리 및 용량검토

- 계획 배수지, 가압장 및 관로 등에 대한 수리 및 용량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 비상연계 및 안정화관로에 대한 연계량 및 비상공급지역을 결정하여 관경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3.4 기본 및 실시설계

가. 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기존시설에 대한 설계도서 및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여 계획 당시의 구조적, 수리적 설계조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나. 기본 및 실시설계

(1) 설계적용기준

- 설계기준 : 환경부 제정 상수도설계기준(시설기준), 관련 제설계기준, 설계지침
- 원가계산방식 : 표준시장단가 공사비 적용(국토교통부 발표자료)
- 시 방 서 : 토목 등 관련 지방서, 과업 일반지방서
- 설계하중, 재료의 단위중량, 절토구배, 성토구배, 안전율, 공법(가시설 포함) 적용은 “안”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구조형식, 배수처리, 부대시설 등에 대하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정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의 작성과 설계도면에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 관매설 토피는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 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2) 토 공

- 토공 이동량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성토구배 및 비탈면 처리방법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중 인근 지역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대책을 고려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운영상 편리하고, 양호한 기초지반에 위치하도록 계획한다.

(3) 관 로

- 관로노선 선정시에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부지확보,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몇가지 대안을 제시한 후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노선을 채택하여야 한다.
- 관내의 부압, 지질여건,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관종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내의 수압, 차량하중, 토피 등을 고려하여 관두께를 결정하여야 한다.
- 곡관부의 보호공, 하천횡단, 국도 횡단 및 기타 구조물 설계는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관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적정위치에 각종 제수밸브, 공기밸브, 배출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로의 매설깊이는 동결심도와 도로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결정하며, 도로하중을 고려하여야 할 위치에 관을 부설할 경우에는 차량하중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배수지 및 가압장

- 배수지 주위 상부는 도시계획을 검토하여 주위 경관에 조화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배수지 및 가압장 구조물의 설계는 극한강도 설계법에 의하고, 국토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 배수지 수심은 3~6m로 설계하되 관망해석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배수지 및 가압장에는 환기시설, 맨홀(배수구 및 출입) 및 유량계설 등을 유지관리 및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지의 진입도로 구배는 차량진입이 원활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 노출되는 배수지 및 가압장 부대시설 구조물은 주위환경에 조화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배수지 및 가압장의 배치 계획시 우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수행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 물과 접하는 부분의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수밀 콘크리트 시공기준에 준하며, 방수대책을 강구한다.
- 구조물 설계시 지하수에 의한 양압력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안정성(Stability)을 검토하고 그 대책을 강구한다.
- 수밀구조물의 시공 이음부나 신축이음부에는 누수가 되지 않도록 지수대책을 검토하고 그 위치 및 재질은 구조물의 경도나 기능, 외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결정하며 설계시 간격, 배치 등을 설계도에 명기한다.
- 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정성을 검토하고 이때 지역 및 구조물 중요도를 감안한 내진검토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5) 건축설비

- 건물은 용도와 기능에 맞도록 적정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건물의 적절한 배치와 기능상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건축법상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구조설계는 설계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로 하되 경제적인 단면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평면설계는 동선계획, 시설물 설치공간, 각 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입면설계는 주위와의 조화, 형태 및 기능,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하고, 외부마감은 미려하고 경제적이 되도록 계획한다.

(6) 기계설비

- 기종선정은 기기의 효율, 기능 및 유지관리의 난이도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전기설비

- 조명설비는 옥내·외로 구분하고, 주변환경에 적합한 고효율 기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는 전기기술 기준령, 전기공급규정, 배전규정 및 내선규정 등을 근거로 시설물의 특성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8) 계측제어설비

- 모든 설비는 가능한 무인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심 정수장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기타 부대설비

- 우·배수설비는 홍수시 원활히 우수를 배제할 수 있는 용량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조경시설은 주위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울타리 및 방호설비는 국가보안 관계법규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기타 부대시설은 관련 시설물 설계규정 및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10) 도면작성

- 설계도면을 위한 작성은 KS1001, 토목제도 통칙 KS 150A에 준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격 및 토목규정에 준한다.
- 설계도의 각종 재료 및 재료규격을 상세히 표시하여야 하며, 배수지의 위치도는 1:50,000 ~ 1:5,000, 관로의 일반평면도 및 단면도는 1:1,000 ~ 1:100 으로 작도하고 단위 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단면도는 1:50 또는 1:100, 1:200 축척으로 하되, 상세도는 1:10, 1:20, 1:30 또는 None Scale로 작도한다.
- 대내외 인·허가자료는 허가관청 축척으로 제출한다.
- 도면표기는 미터법 단위로 표기하며 사용문자는 국문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
- 도면은 CAD로 작성하고 CD로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상에 측량성과도에 의한 BM, 도로점의 좌표, 표고를 표시한다.

(11) 설계서 작성

-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공사비산출은 내역서 및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계산서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국토부 제정 표준품셈, 중기사용료 및 국내 물가시세표(가격정보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야 한다.
- 시방서는 정부제정 각종 시설규정, 지침 및 KS, KWWA, AWWA, JIS, ASTM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각 공정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자재 구입시방서는 가능한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는 국토교통부 발표자료를 참고한 실적공사비 작성방법을 적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5 각종 인허가서류 작성(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등)

-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을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지적사항 보완 후 최종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나. 도시계획시설결정 최종 서류는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용역사업 발주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6 사업집행계획 수립

- 가. 사업비 산정
- 나.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 다. 연차별 투자계획

4.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구 분	착수일로부터(12개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기초자료 및 관련계획 검토	■	■												
○ 현장조사			■			■	■	■	■					
○ 기본설계			■	■	■	■	■	■						
○ 실시설계						■	■	■	■	■	■	■		
○ 기타행정사항 및 인허가										■	■	■	■	
○ 성과품작성 및 보완											■	■	■	